

## 고흥군 4에이치(4-H)활동 지원 조례(안) 입법예고

( 송영현 의원 발의 )

「고흥군 4에이치(4-H)활동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0년 9월 7일

고흥군의회의장



1. 조례명 : 고흥군 4에이치(4-H)활동 지원 조례

2. 제정이유

- 『한국 4에이치 활동 지원법』에 의거 고흥군 4에이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, 문화 그 밖의 교육 훈련활동
- 4에이치 주관단체의 지정
-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
-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결산보고
- 업무검사 및 과태료 부과

4. 예고기간

- 2020. 9. 7. ~ 9. 28. (20일간)

## 5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0. 9. 28.(월)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(의회사무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내용 :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

- 개 인 :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- 기관·단체 :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- 제출처 : 고흥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주 소 :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(59542)

- 전 화 : 061-830-6065 (FAX 061-830-5595)

- 제출방법 : 우편, FAX, 직접방문

붙임 1. 고흥군 4에이치(4-H)활동 지원 조례안 1부.
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## 고흥군 4에이치(4-H)활동 지원 조례(안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」 제5조에 따라 고흥군 4에이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흥군 청소년과 농촌 후계 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4에이치”란 명석한 머리[Head, 지육], 충성스런 마음[Heart, 덕육], 부지런한 손[Hands, 노육] 및 건강한 몸 [Health, 체육]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[4-H]을 말한다.
2. “4에이치” 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목의 활동을 말한다.
  - 가.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, 문화활동, 그 밖의 교육 훈련 활동
  - 나. 4에이치 이념을 확산·발전시키기 위한 홍보·출판 및 연구활동
  - 다.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 교류활동
  - 라. 그 밖의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운동

**제3조(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)** 고흥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는 4에이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흥군 관내에 있는 비영리단체를 4에이치 본부(이하“주관단체”라 한다)로 지정 할 수 있다.

**제4조(보조금 지원)** 군수는 4에이치 활동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(이하 “주관단체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**제5조(군유시설의 사용)** 군수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를 지원·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**제6조(사업계획의 제출)**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연중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, 이를 변경 할 경우에는 사업예정일 또는 예산집행 예정일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 공익에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예외로 할 수 있다.

**제7조(결산보고 등)**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관단체는 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,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 6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업무검사 등)** 군수는 보조금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9조(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)** 누구든지 주관단체로 오인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, 주관단체의 동의없이 주관단체가 정한 수용품 및 표지를 제작 사용할 수 없다.

**제10조(과태료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.

1. 제6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사람
2.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 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 사용한 사람

**제11조(준용)**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 례 명 : 고흥군 4에이치(4-H)활동 지원 조례(안)

성명(단체명) :

주 소 :

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